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교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문화예술진흥, 복지사회구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서울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을 혁신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있음.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 4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 2000. 6.20(화)~6.29(목), 10일간

4.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 국제협력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공사강남병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시립보라매병원

5. 감사위원회 편성 : 16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민주당	이영순	
간 사	〃	김성환	
간 사	한나라당	장진국	
위 원	민주당	김성규 나종문 서홍선 유준상 이강진 이동진 이예자 임호식 최명옥 허광태 홍승채	・전문위원 : 윤병국 ・행정5급 : 김명용 ・행정6급 : 윤종수 ・행정7급 : 서형석 ・기능9급 : 최은희 ・기능9급 : 심선영 ・속기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한나라당	길기연 이해식	

30 (第119回-文敎保社第1次)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감사대상	감사장소	비 고
2000.6.20 (화)	10:00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문교보사위원회 회의실	
2000.6.21 (수)	10:00	세종문화회관	〃	
	15: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0.6.22 (목)	10:00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노인+장애인+노숙자)	〃	
2000.6.23 (금)	10:00	보건복지국 (위생+의약+병원)	〃	
2000.6.24 (토)	10:00	국제협력담당관	〃	
	12:00	보건환경연구원		
2000.6.26 (월)	10:00	여성정책관	〃	
2000.6.27 (화)	10:00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2000.6.28 (수)	10:00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전체)	〃	
2000.6.29 (목)	10:00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문교보사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7. 주요감사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감사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ㅇ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ㅇ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ㅇ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여성정책관 및 산하기관	〃	ㅇ여성권익증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ㅇ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ㅇ여성복지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 ㅇ보육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 대책 ㅇ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국 및 산하기관	〃	ㅇ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 업무의 적정성 ㅇ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ㅇ장애인복지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ㅇ복지관 확충 및 복지기반 조성 업무의 추진 실태 ㅇ장묘시설 확충과 화장유도 방안 ㅇ보건소 시설확충 및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식품안전관리 및 위생감시 강화 방안 ㅇ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및 지원 실태 ㅇ노숙자실태 및 보호관리 대책 ㅇ실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책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화시설과 환경 확충 및 육성 실태 ○체육활성화 및 시설 확충 방안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 관광개발진흥과 관련된 사항 ○시립박물관 개관 준비 실태 등
보건환경 연구원	〃	○에이즈,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균 등의 검사 및 연구 실태 ○일반의약품, 생약, 화장품 등의 시험검사 및 연구 ○각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중 잔류농약 등 검사 및 연구 실태 ○대기오염도측정조사, 소음, 진동검사 및 연구 ○한강수질환경, 하천오염,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측정 검사 및 연구 실태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시험 및 연구 실태 등
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체육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수입금의 수납 및 정산관리
국제협력 담당관	〃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협력 증진 실태 ○국제기구·회의에서의 역활증진 실태 ○해외 서울관, 주재관 운영의 내실화 등
지방공사 강남병원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약품, 의료장비관리의 적정성 ○의료보호환자 관리의 적정성 ○시민보건 향상 사업추진 실태 ○의료진 확보실태와 진료수준 향상 방안 ○장례식장 운영 실태 등
시립보라매병원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약품, 의료장비관리의 적정성 ○의료보호환자 관리의 적정성 ○시민보건 향상 사업추진 실태 ○의료진 확보실태와 진료수준 향상 방안 ○장례식장 운영 실태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1999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00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 사항 ○ 사설학원 인가, 등록, 신고 및 지도, 단속 관련 사항 ○ 학생복지증진(급식시설 확대 등)과 교원 사기 앙양에 관한 사항 ○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불법 고액과외 근절대책 ○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실태 ○ 기타 교육청 소관업무 및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8.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50부를 사전제출하여야 한다.
 가. 2000년도 각종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나.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현황
 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
 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마.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각 감사위원은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2000.5.25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
  ※ 위원장은 의장에게 자료요구
9.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서식(서류제출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00.5.25까지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실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다.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과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의 장(부서장)으로 함.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함.
  3)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및실비보상(조례 제8호)
   · 과태료부과(조례 제9호)
   · 고발및준용사항(조례 제10조, 11조)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문교보사위원회 소관 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시행령 제17조의 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시행령 제17조의 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17조의 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3일 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10.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각 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 후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본회의 회부 및 의결
6) 작성요령
○ 요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00. 1. 1~5. 31 기준으로 작성
○ '99회계년도 결산자료는 '99. 1. 1~12.31을 기준으로 작성

.....

여성정책관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관련
선도·재활대책(안)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흐름도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은 성매매밀집지역 및 기타 관련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각 기능부서별 예방, 단속, 선도·재활대책을 수립·진행중이며, 본 보고는 여성정책의 주 대상인 선도·재활대책을 중심으로 함.
-성매매밀집지역(5개소)(미아리,청량리,천호동,용산,영등포)
·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싸롱
·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PC방
· 티켓다방, 직업소개소
· 보도방,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 퇴폐이발소, 증기탕
· 출장안마 등
1) 예방대책
건전청소년육성 : 가정-학교-사회시스템 제기능 수행 - 문화관광국
2) 단속대책
민관합동 성매매행위 집중단속 - 보건복지국
3) 선도·재활대책
보호시설 기능 활성화, 요보호 청소년의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 - 여성정책관

Ⅰ. 선도·재활대책의 추진배경
□기본 추진배경
○ 최근 우리사회의 性윤리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청소년 성매매행위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단속 이후의 체계적인 선도·보호 및 자립·재활 대책 필요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7.1)에 앞서 대책 필요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보호대상인 사회구조의 피해자로서 인식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4단계 보호처분(귀가처분,